

2020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-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 지원 -

○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 지원개요 (변경공고 반영)

■ 지원내용 :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무이자 용자 [6개월 고용유지 조건]

- ※ **직접대출 지원이 아니며**, 은행에서 기업의 담보, 신용,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대출을 승인할 때 지원이 가능함
- ※ 당해연도에 **인천광역시 긴급 경영안정자금(코로나19 특별자금)**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■ 지원대상 :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체

- 1) 코로나19 피해기업 : 하단참조
- 2) 근로자 50인 미만 : 최소 1명 ~ 최대 49명, 고용보험가입인원 기준
- 3) 제조업체 : **전업률 30% 및 공장등록**(제조면적 500㎡ 미만일 경우 제조소용도 필수) 충족

■ 용자한도 : 최대 3억원 이내

- ※ 한도산정 기준 : 하단참조

■ 용자금리 및 용자기간 : 무이자 / 2년 [만기일시상환]

- ※ 6개월 고용유지 미충족시 금리조정 : 하단참조

■ 용자은행 : 시금고 전대약정은행 (신한, 기업, 국민, 농협)

■ 신청기간 : 2020. 9. 9(수) ~ 소진시까지

■ 신청방법

- 이메일접수 : finance@itp.or.kr
- 방문접수 :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1층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

■ 신청문의

-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자금지원담당자 : ☎ (032) 260-0621, 0622, 0623, 0624

■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 확인

- 비즈오케이 접속(<http://bizok.incheon.go.kr>)

○ 코로나19 특별자금 피해유형

피해유형1 [조업중단]	사업장 내 확진환자, 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이 발생하여 조업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기업
피해유형2 [중국거래]	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원부자재, 부품 등을 수입(간접 및 예정포함)하는 기업 중국으로 부품, 제품 등을 수출(간접 및 예정포함)하는 기업
피해유형3 [중국 외 해외거래]	해외 현지 업체로부터 원부자재, 부품 등을 수입(간접 및 예정포함)하는 기업 중국이 아닌 해외로 부품, 제품 등을 수출(간접 및 예정포함)하는 기업
피해유형4 [간접피해]	위의 피해유형 1번에서 3번까지 해당되는 업체와의 거래업체
피해유형5 [매출감소]	코로나19 확산 관련 경기부진으로 매출이 10%이상 감소된 기업

○ 지원한도 산정방법

■ 업체당 한도 : 최대 3억원 (백만원단위 절상)

■ 한도산정 : 고용인원 또는 매출액 기준 中 택일

1) 고용인원 기준 : 종업원 수* × 264만원 × 3개월**

* 종업원 수 : 최소 1명 ~ 최대 49명, 최근 월 고용보험서류 인원 적용

** 3개월 : 고용인원 관계없이 적용

2) 매출액 기준 : 매출액 × 1/3 (매출액 150백만 원 미만 지원가능 한도 : 50백만 원)

■ 한도산정 예시

<최소 지원한도>

- 신청 시 고용인원 및 매출액 : 고용인원 7명 미만 또는 매출액 150백만 원 미만
- 지원한도: 50백만 원

<고용인원 기준 지원한도>

- 신청 시 고용인원: 15명
- 인원별 금액산출: 15명 × 264만 원 × 3개월 = 118,800,000원 (백만원단위 절상)
- 지원한도: 119백만 원

<매출액 기준 지원한도>

- 신청 시 매출액: 600백만원
- 지원한도: 200백만 원 (600백만원 × 1/3)

<최대 지원한도>

- 신청 시 고용인원: 49명
- 인원별 금액산출: 49명 × 264만 원 × 3개월 = 388,080,000원 (백만원단위 절상)
- 지원한도: 389백만 원 → 300백만 원

○ 사후관리

■ 고용유지 확인 : 대출 실행 6개월 후 1회

- 1) 확인시점 : 대출이 실행된 달로부터 7개월 째 되는 달의 15일까지 서류 제출
- 2) 제출서류 : 최근 월 고용보험 관련서류 (고용보험가입자 명부,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)
- 3) 확인내용 : 고용유지 충족 여부 (자금 신청 시와 동일인원 유지)
 - 기준인원 : 신청 시 고용인원을 그대로 적용
 - 소명서류 : 구인광고 게재 등 구인활동 증빙 시 충족으로 간주

■ 미충족 시 금리조정 시점 : 고용유지 확인시점의 다음달 1일부터 전환

■ 조정금리 : 기준대출금리(COFIX금리+0.8%) ※ 2020년 3분기 기준 : 1.8%

동 자금은 대출취급은행에서 담보(부동산, 신용보증서, 신용담보 등)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, 신용보증기관 등과의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.